

서울특별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회부경위

가. 의안번호 : 제776호

나. 발 의 자 : 이원형 의원(찬성자 12명)

다. 발의일자 : 2023년 5월 30일

라. 회부일자 : 2023년 6월 5일

2. 제안이유

- 「서울특별시 희망경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가 폐지됨(2023.3.27.)에 따라 조례에 인용된 희망경제위원회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장애인기업지원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가. 장애인기업지원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을 희망경제위원회가 심의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, 장애인기업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신설함.(안 제9조)

4. 검토의견 (수석전문위원 강상원)

가. 개정안의 개요

- 희망경제위원회의 폐지(2023.3.27)에 따라 후속 입법 조치로 관련 조항을 삭제(제9조제2항)하고, 장애인기업지원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발의됨.

나. 조례안 정비와 위원회 관련 사항 신설의 필요성(안 제9조)

- 서울시는 2013년까지 「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」에 근거하여 ▶장애인 창업강좌 운영, ▶장애인 창업보육센터 운영, ▶장애인 창업 전문 상담실, ▶장애인기업 무장애 시설지원 사업 등의 장애인기업 지원 사업을 시행함.
- 이후 「서울특별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」를 제정(2015.5.14.)하여 장애인기업과 장애경제인에 대한 ▶교육·훈련 및 연수, ▶정보 및 자료제공, ▶경영활동 및 판로 지원, ▶제품전시회·박람회, ▶해외 시장 개척 등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함.
- 또한 장애인기업지원위원회를 설치하여 ▶지원계획의 수립·시행, ▶장애인기업활동 촉진과 지원, ▶공공구매 및 중소기업육성기금 용자 우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하면서 그 기능을 희망경제위원회가 대신하도록 함¹⁾.

1) 「서울특별시 희망경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일부개정(2015.5.14.)

제9조(장애인기업지원위원회의 설치) ①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장애인기업지원위원회를 둔다.

1.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·시행에 관한 사항
2. 제7조에 따른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
3. 제8조에 따른 장애인기업의 우대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

② 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장애인기업지원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에 대해서는 「서울특별시 희망경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서울특별시 희망경제위원회가 심의한다. 이 경우 서울특별시 희망경제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장애인기업지원위원회로 본다.

- 그러나 「서울특별시 희망경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가 폐지(2023.3.27.)되면서 장애인기업지원위원회 관련 조문의 정비 필요성이 제기됨.
- 개정안은 현행 조례의 희망경제위원회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, 장애인기업지원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는 것임.

현 행	개 정 안
<p>제9조(장애인기업지원위원회의 설치)</p> <p>①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장애인기업지원위원회를 둔다.</p> <p>1. ~ 4. (생략)</p> <p>② 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장애인기업지원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에 대해서는 「서울특별시 희망경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서울특별시 희망경제위원회가 심의한다. 이 경우 서울특별시 희망경제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장애인기업지원위원회로 본다.</p> <p><신설></p>	<p>제9조(장애인기업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하며,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</p> <p>③ 당연직 위원은 경제정책실장으로 하고,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.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장애인기업에 대한 전문성과 학계에서 관련 연구경험이 있는 사람 2. 장애인기업 관련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

<p><신 설></p>	<p>3.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4. 그 밖에 장애인기업지원 정책의 수립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</p>
<p><신 설></p>	<p>④ <u>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. 단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</u></p> <p>⑤ <u>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.</u></p> <p>1. <u>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</u> 2. <u>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할 때</u> 3. <u>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</u> 4. <u>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</u></p>
<p><신 설></p>	<p>⑥ <u>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</u></p>

- 희망경제위원회 폐지의 후속조치로 장애인기업지원위원회의 기능을 재정비하여 원활한 장애인기업지원 시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함.
- 다만, 서울시는 조례 제정 이후 장애인기업지원계획이나 지원사업을 시행하지 않으면서 조례의 실행력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조속한 계획 마련과 지원사업 추진이 촉구됨.

<p>담당 조사관</p>	<p>연락처</p>
<p>이성찬</p>	<p>02-2180-8061</p>